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2018. 12. 10.)

검 토 보 고 서

검 토 안 건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징수과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희옥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8년 11월 19일 (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0일 (화)

4. 관계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5. 제안이유

- 2018. 4. 11.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되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관련한 위생용품 영업 신고 등의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이 변경되고,
- 2017. 12. 21. 개정 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한 정보공개 대상 및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상위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6.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72종)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	
		현행	개정안
26)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1건	7,000원	28,000원
27) 위생용품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	1건	3,500원	20,000원
28) 위생용품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신고	1건	20,000원	9,000원
29) 위생용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건	10,000원	9,000원
30)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7,000원	삭제
31)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삭제

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44종)

종목	열람·시청	현행		개정안	
		단위	수수료	단위	수수료
문서·도면·사진 등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2,000원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	가.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2,000원	1일 1시간 이내	무료
	가. 문서·도면·사진 등 2) 문서·도면·사진 등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200원	<삭 제>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0원	<삭 제>	<삭제>	
		※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7.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다.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8. 10. 11. ~ 10. 31. (20일간)
- 2)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3)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2018. 11. 8.)

8.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온 신고 수수료가 2018. 4. 11. 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종목과 금액이 변경되고,
- 2017. 12. 21. 개정 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정보공개 대상 및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상위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 검토의견으로는

- 「공중위생법」 폐지 후 위생용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그동안 폐지된 법에 의거 적용한 신고 수수료 관련 사항을 새로운 법 제정에 따라 수수료 적용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해당되는 자체 조례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적법한 제도 운영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관계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837호, 2017. 4. 18, 제정]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람에게서 화학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등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영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3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3.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4. 19] [총리령 제1454호, 2018. 4. 11, 제정]

제27조(수수료 납부)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신고·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9]

수 수 료 [제 27 조 관 련]

1. 영업의 신고·변경신고 등

가. 영업신고: 28,000원

나. 변경신고

1) 영업소 소재지 변경: 20,000원

2)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 9,000원(영업자 성명 변경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3) 영업소 소재지 및 소재지 외 사항을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9,000원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만 적용한다.

라. 영업의 신고·변경신고 등 수수료의 면제

1)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변경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2.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가. 검사수수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다만, 수입신고인이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검사기관이 정한 검사수수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따른다.

나. 검사수수료의 면제

1) 별표 3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2)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내외 위생용품 관련 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 02-2100-3423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쇄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1] [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7. 12. 21, 일부개정]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5. 28.]

[별 표] <개정 2017. 12. 21.>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쇄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p>필름 · 테이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p>마이크로 필름 · 슬라이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비용은 별도
------	--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